

청년예술인 참여예산 도입방안

- 2022년 청년예술가사업 내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

2022. 11.

시시한연구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조사보고서를 <청년예술인 참여예산 도입방안: 2022년 청년예술가사업 내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자: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배경과 목적	1
(2) 조사연구의 방법	3
2.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5
(1)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10
(2) 국민참여예산제	24
3. 제도 도입 방안: 청년예술가사업 내 시범사업	48
(1) 예술인참여예산 사업의 제도 구성(안)	48
(2) 예술인참여예산의 운영구조(안)	51
(3) 예술인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	60
4. 나가며	65

표 차례

표 1	조직분야 6번째 과제 권고내용	2
표 2	2017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법제도 변화	5
표 3	2017년 이후 참여예산제도 시책 추진현황	6
표 4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류(단위: 억 원)	8
표 5	대구시 참여예산제 운용사례(2020년 기준)	8
표 6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변화	11
표 7	연도별 서울시참여예산 제도 개선사항	13
표 8	서울시 참여예산 연간 추진표(기준: 2018년 운영계획)	14
표 9	서울시 참여예산 과정의 요소와 내용	15
표 10	현행 서울시 참여예산제 사업유형	17
표 11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구조	18
표 12	2018년 예산학교 기본 커리큘럼	20
표 13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와 청년자율제 운영비교	24
표 14	국민참여예산제 공약 현황	24
표 15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25
표 16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지자체의 재정효과	27
표 17	국민참여예산 단계별 고려사항	31
표 18	부처 적격성 검토 심사표	32
표 19	예산국민참여단 분과별 소관부처	34
표 20	국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변화 현황	35
표 21	국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37
표 22	지원협의회 구성 변화	38
표 23	참여예산운영 프로세스 변화(2020년/2021년)	39
표 24	국민참여예산 사업 결과 현황	40
표 25	제안사업 부 기관별 현황	41
표 26	부처별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현황	43
표 27	심의기준	48
표 28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예시)	49
표 29	예술인참여예산을 반영한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유형(안)	49
표 30	참여당사자의 수준(안)	50
표 31	재원지원 방식	51
표 32	예술인참여예산 구조(안) 개요	51
표 33	예술인참여예산 운영 체계도(안)	53
표 34	참여예산사업제안서를 참조한 예술인참여예산사업 신청서(안)	54
표 35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구성 현황	55
표 37	예술인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구성(안)	56
표 38	통상적인 참여예산 부적격 기준	57
표 39	서울시 예산안 주민의견서 작성절차	59
표 42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일정(2020년 기준)	60

그림 차례

그림 1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절차	12
그림 2 2018년 서울시참여예산 사업구조	16
그림 3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관련 구조	5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배경과 목적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담당해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0년대 이후 기존의 진흥원 체계에서 위원회 체계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2007년 <공공기관법> 개정 이후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편입되면서 위원회 체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된 공공기관으로 간주되면서 위원회 전환의 취지가 퇴색했다. 이런 상황은 이후 다양한 사업구조의 발굴과 집행 방식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예술계 현장의 지속적인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2017년에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지원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지원배제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심각하지만 그와 함께 블랙리스트가 가능한 구조적 환경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고 이는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의 기관개선 보고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TF’의 권고안으로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의 기관개선 보고서에서는 예산에 대한 조정권한이 문화부와 기재부에 존재하고 이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문화부가 조정권을 행사하고 또 기획재정부가 추가적으로 조정권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현재 민관 협력은 명분만 있을 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문화부-기재부로 이어진”¹⁾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 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붕괴했고 기존의 위원회 구조는 장르별 안배에 따라 구성되다 보니 사실상 장르 중심의 자원배분에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즉 외부적으로는 문화부-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부처 관료들의 통제와 내부적으로는 장르별로 특화되어 있는 위원회 내부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가진 한계가 지적된 것이다.

이런 과정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TF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제안되었는데, 조직분야 10가지와 사업 분야 13가지로 구성된 총 23가지 혁신과제 중에서 “(조직과제 6) 공모 및 지원 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의 참여 확대, 예술현장의 대변자로서 예술위 역할 강화”와 “(사업과제 1) 예술위 정책 결정 과

1) 신용목 등(2018), 블랙리스트 방지 주요기관 제도개선 연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49쪽.

정에서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 강화를 다룬다. 특히 조직분야 6번째 과제에서는 개방성, 현장성, 신뢰성에 근거한 현장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원사업의 과정이 공유되지 않은 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표 1 조직분야 6번째 과제 권고내용

진 단

- 예술위의 역할정립은 개방성, 현장성, 신뢰성에 근거한 현장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야 함. 그 간 예술위 사업은 예술인과 국민이라는 정책대상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구조 마련이 미흡했음.
 -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도 지원 사업 과정이 공유되지 않은 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 지원 사업 수행과정은 예술인을 사업의 주체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지원 사업 전반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미흡했음
- 단순 사업관리가 아닌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창작활동 과정, 기타 고충상담 등의 고민을 담아내고 예술가들을 응원할 수 있는 현장의 대변자로서 역할이 필요함

제 안

- 단기적으로 지원 공모사업과 함께 각종 공공계약 과정에서 예술인이 겪는 일반 행정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컨설팅 기능과 지원 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 움브즈만 제도”신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 중 “문화 움부즈맨 제도 도입”)
 - 계약, 정산 등 창작활동 과정에서의 지원컨설팅 지원 강화
 - 기타 예술인들의 고충, 애로 등을 상담지원 기능 확대 : 폭력예방전문가가 되길 희망하는 예술인 교육개설, 예술계에서 이슈화되는 분야의 전문가 교육과정 등 무료 배움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의
- 장기적으로 공모/지원사업의 심사와 평가과정 사이에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의 모니터링을 실시
 - 현행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움부즈맨 제도를 차용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고 모니터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참여하는 “예술인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
 - 모든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강화하여 사업의 책임과 집행 담당자가 사업 전 과정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함

그런 점에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한 혁신과제의 실행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예술지원의 대표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현장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공급-수혜’라는 일 방향적인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온 예술지원제도 내에서의 관행과 인식이 쉽게 바뀌기 어렵고, 이는 기관의 한계라는 측면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예술인들이 공공자원을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것에 익숙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기인한다. 즉 제도의 변화는 제도가 작동해왔던 의식적 무의식적 경로의존성을 탈피할 때 가능하다. 그 점에서 예술현장의 정책참여는 오랫동안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참여를 촉발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예술인 직접 참여의 경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본 조사연구는 2011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민참여예산제를 참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참여예산적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참여예산제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진행된 참여제도로서 해당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사업의 구조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예술인참여예산제도를 전체 기금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분적인 시범사업의 형태로 예술인참여예산제도의 모델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조사연구의 방법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우선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예산제의 운용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예술인참여예산제의 모델을 도출하는 시사점을 찾는다. 특히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기존의 청년정책 중 청년참여제도의 특징을 살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선정하였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거주지 중심으로 사업이 신청되고 선정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연구의 과제 대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운용 현황이 상

대적으로 의제 중심의 사업제안 사례로 적합하다. 또 서울시 제도는 청년참여제도 중에서 예산참여의 제도인 ‘청년자율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토대가 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미 하나의 분과로 청년예술인들이 주요하게 참여하는 문화분과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참여예산 방식의 참여제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존재한다. 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제도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고려하는데 이미 청년자율예산제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예술인 당사자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참여예산제를 다룬다. 현재 국민참여예산제는 대상 기관을 정부부처와 청으로 한정되어 시행 중이다. 특히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 중이지만 실제 국민 참여의 방식으로 사업이 제안되고 실행까지 진행된 사업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 즉 현재 국민참여예산제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과 연관된 사업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별도의 예술인참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제도적으로는 국민참여예산제가 별다른 법의 개정 없이 기존의 <국가재정법> 상의 국민 참여 보장 규정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특징에 주목한다. 이는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참여예산 역시 별도의 법령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금을 통한 지원 사업 중 하나의 사업 내에 세부사업 형태로 반영하려는 것인데, 이 때 참여형 사업제안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로 국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근거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민참여예산제의 운용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선행 사례 연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사례 조사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술인참여예산의 대상이 되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내에 참여예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제안한다. 일종의 제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참여예산제의 각 과정별 참여 특징을 전제로 기금 운용의 특징을 고려하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구조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예술인참여예산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의 예시 모델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 연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참여예산 제도의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사례 조사와 제도 분석 그리고 이를 고려한 제도 도입방안을 가설적으로 제안한다.

조사연구 방법의 특징 상 제도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실제 참여 대상의 인식이나 수용성에 대한 고려와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 및 조직구조에 대한 고민을 담지 못한 것은 한계로 이후 제도 도입과 운용 과정을 앞두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계로 밝혀 둔다.

2.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참여예산제는 애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에 강조가 되었던 것에 반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수용, 확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참여예산 제도의 도입과 수용과정에서의 변화는 낫선 것은 아닌데, 2013년 유럽의 참여예산제 현황을 바탕으로 참여예산제 도입 목적을 6가지로 구분한 신토머(Sintomer etc(2013) 역시 최초의 도입 목적에서 변화해가는 제도 운용 목적을 다양하게 관찰한 바 있다. 한국의 참여예산제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은 국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참여예산제의 강화를 동시에 강조한 정부가 등장한 2017년 이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기존 <지방재정법>의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제도의 실질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시기의 내용을 주되게 살펴보면, 2017년 국정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언급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후 2018년 3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참여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시행령 개정은 이런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나열했는데 특히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이는 그동안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운용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중앙정부가 평가와 컨설팅이라는 방식으로 주민 참여예산제의 운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표 2 2017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법제도 변화

시기	내용
2017.7	국정과제(75번)의 실천과제로 선정(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 국정과제(75번)-실천과제(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 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 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
2018.3	지방재정법 개정【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주민참여기구 설치 규정 신설 등(2018. 6월 시행)】 제39조(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회예산 심의 제외)에

	<p>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둘 수 있다.</p>
2020.3	<p>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전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신설(2020.3.3. 시행)】</p> <p>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하 생략)
기타	<p>중앙정부: ①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제도 연구(2017년~)</p> <p>② 지방자치단체 컨설팅(2018년~)</p> <p>지방자치단체: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심 증가</p> <p>②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모델 운영 단체 증가</p>

*임성일(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재구성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조치를 취했는데,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과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한 컨설팅 제도를 지원한 것에서 이후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에 대한 지침을 활용한 것, 그리고 매년 우수 운용사례의 발굴을 통해서 여력이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시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2017년 이후 참여예산제도 시책 추진현황

○ ‘지자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17.09.07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시범평가 실시계획 수립(12.06.)	’ 17.12.~

○ ' 17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우수기관 선정 결과(12.29.)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및 협조 요청	'18.05.01.
○ 주민참여예산제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	'18.10.29.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중점과제 통보 및 시도 자체계획 수립 추진	'19.02.18.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계획 통보	'19.10.23.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19.12.12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20.3.2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시 컨설팅 추진계획	'20.4.5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성과 역시 점차 크게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체 예산 중 참여예산의 방식으로 편성하는 예산의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6% 가까이 된다는 것으로 이는 코로나 19의 상황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2020년에 7% 정도로 나타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다수 편성됨에 따라 전체 결산대비로 하면 2019년에 비해 참여예산사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2019년에 비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익숙한 유형은 공모사업 방식의 참여예산이고 다른 유형은 공모외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반영이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모형의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개별 사업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방식이 있지만 읍면동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주관을 하여 동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필요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자치계획형' 사업 유형도 있다. 이것이 사업의 제안방식의 특징이라면 여기에 지역마다 특화된 대상의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 지원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2) 청소년이나 청년, 여성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예산참

여 과정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제도들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용되고 있다.

표 4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류(단위: 억원)

구분		전체예산 범위 (일반, 특별, 기금)		일반회계 범위	
		2019	2020	2019	2020
공모사업		5,446	8,083	5,214	7,790
공모외 제안사업		9,376	12,100	8,604	11,706
일반참여 예산사업	계	169,629	153,142	166,188	140,710
	공청회	316	1,270	316	1,270
	설문조사	568	2,577	548	2,270
	주민참여예산 기구심의	162,579	148,997	159,148	136,872
자치계획형 사업		2,858	6,429	2,814	6,429
계(a)		187,301	179,781	182,819	166,635
예산규모(b, 총계)		3,130,570	3,852,553	2,615,879	3,142,452
정책사업비(c, 총계)		2,630,814	3,517,749	2,199,702	2,683,525
a/b(%)		5.93	4.67 (7.10)	6.99	5.30 (8.27)
a/c(%)		7.12	5.11 (8.43)	8.31	6.21 (9.89)

*임성일(2020), 앞의 자료. 2020년 괄호 안은 당초예산 기준을 의미.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과거의 직접적인 대면과정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도 개선사례가 발굴되기도 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현황을 보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또한 별도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참여예산과정의 속의 과정을 지원했다. 또 사업발굴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참여예산사업 정보를 분석해서 지역별 사업의 수요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 등 변화가 눈에 띈다.

표 5 대구시 참여예산제 운용사례(2020년 기준)

분야	세부 내용
① 코로나 위기극복 시민의 1%참여 온라인 총회 개최	▶시정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선정 - 현장투표(OMR카드) → 광역자치단체 최초! 전 읍면동 현장투표소 설치 운영 - 온라인투표(QR코드) → 모바일 활용한 접근성 강화로 주민참여 증가 ▶우수사업 선정 : 3개 분야 6개 사업 선정 ▶대구시민의 1%인 24,218명 참여(전년대비 20,806명 증가 709%증가)
② 코로나 위기극복 사이버 예산아카데미 운영으로 주민 1만 명 교육 참여	▶수준별 예산학교 과정 운영 - 기본과정, 심화과정, 읍면동 지역회의 ▶구군 참여예산위원,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지원 ▶전년대비 과정별 수료자 : 10,992명 수료, 9,067명 증가
③ 포스트 코로나대비 언택트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화상회의 시스템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6. - 소요예산 : 130백만 원 ※ 2021년도 예산안 반영 -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시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PC·모바일 환경에서 동시 작동
④ 주민참여예산사업 수요 예측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개요 - 사업기간 : 2020. 9. ~ 10. - 분석대상 : 2018년~2020년 주민제안사업 8,265건 - 분석내용 : 2020년 주민참여예산 구군별 사업 특징분석, 2018~2020년 선정사업 분석을 통한 추이예측 및 사업비 분포분석 - 기대효과 : 지역 사업자들의 경제활동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⑤ 주민 속으로 한 발짝 더! 쉽고 친근한 주민참여예산 홍보	▶초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웹툰 제작 ▶유튜브 영상 자체제작을 통한 홍보로 청년층 참여 활성화 - 청년층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행어 및 영상소스 활용 - 전년대비 눈에 띄는 조회수 증가(5,815회 → 13,354회)
⑥ 다자간 우수 협력모델 발전으로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139개 전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다자간 우수 협력모델 발전으로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및 자치역량 강화 -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구군, 읍면동 ▶139개 전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67명 컨설팅단 육성·과건

2011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양적인 확대를 겪다가 2017년 이후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체적인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제도의 토착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역별 특징에 맞는 참여예산제의 유형을 개발하고 이를 컨설팅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특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유형을 구분하고 시의 경우에도 50만 이상 시와

미만 시로, 그리고 군과 자치구를 분류하는 6개 유형 분류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지역별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특징을 보더라도 단일 유형의 참여예산제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군민참여단과 같은 별도의 주민참여방식을 결합하는 형태랄지(충남 서천군), 단순히 참여기구의 다양화를 벗어나 아예 별도의 예산편성권을 나누는 청년자율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한달지(서울시) 기존 참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낭비감시단의 활동과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한달지(대구광역시)와 같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제안 과정에서 집행 과정으로의 참여 대상 변화: 주민참여예산제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예산참여의 범위가 기존의 공모형 사업제안에서 전체 편성예산에 대한 것으로 범위 상 확대가 이루어진 것 외에 제안 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간단하게는 기존에 사업부서가 고유하게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해왔던 과정이 참여예산기구와 사업부서 간 사업 구체화라는 방식으로 숙의과정이 강화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집행 과정의 참여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소위 ‘협치형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집행의 과정을 전제로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프로세스를 별도의 참여예산 유형으로 운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따라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예술인참여예산제도의 사례로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 (1) 가장 제도화 수준이 높은 재정참여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인구가 많은 도시의 참여예산제라는 특징으로 다수 시민의 참여라는 모델이다
- (3)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바뀌는 등 제도 탄력성이 높다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도입부터 매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는데,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초의 참여예산도입 방향성이 크게 바뀌는 중범위 제도 개선도 진행되었으며 제도변화 단계를 크게 도입기 -

정착기 - 성숙기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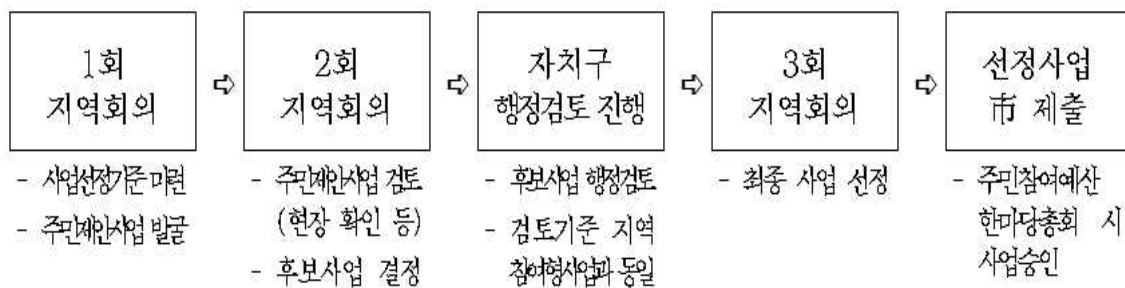
도입기	정착기	성숙기
2012~2013 -제도 도입 논의 및 조례 제정 -지원협의회 등 거버넌스 기구의 도입 -시정/지역 사업의 분화	2014~2016 -시민 사업선정 과정의 도입 -운영위원회 제도화 -컨설팅 등 사업숙성 과정의 제도화 -동지역시범사업 실시	2017~ -민관협의회 등 과정 중심 제도로 전환 -계획기반형/협치형 사업 유형의 도입 -참여결산 등 온 예산 과정의 강화

우선 도입기에는 당시 참여예산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데 반해, 천만 서울시민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참여예산제라는 직접적인 시민참여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고민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제도 도입기부터 새롭게 보궐선거를 통해 등장한 민선 6기 서울시정의 특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 도입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2012년 1월부터 서울시의 제안으로 서울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라는 임의적인 단체를 만들어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애초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참여의 직접성과 권한의 이양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운영 과정에서 사익이 개입할 수 있다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발생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상 최소한의 참여예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참여예산제는 초기에 우려를 불식할 만한 시민참여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반해 자치구간 경쟁 구조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실제 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회의시 이야기의 독점 문제나 위원들 사이의 다양한 위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남녀 동수 위원장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넘어서, 기존 단일 사업 구조가 시정형 사업과 지역형 사업으로 분리 정착하게 된 2014년 이후는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해 도입하고 사라졌지만, 자치구 간 경쟁을 제재 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치구당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점 등의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업

제안의 구조가 다양화되었고 이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한 지원 구조가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초기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매개하고자 했던 노력이 사업 제안자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실험과, 시범사업에서 정규 분과로 정착한 온예산 분과의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기존의 시정형 사업과 지역형 사업의 사업구조가 점차 복합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상 불가피하게 자치구의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같음할 수밖에 없는 점과 동시에 서울시의 독자적인 제도로써 독립성을 가진 참여예산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위치에 대한 고민이 진행된 것이다. 전자는 자치구 참여예산제의 평가를 통해서 차등적인 지역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서 별도의 동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까지 진행되었다.

그림 1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절차



동 지역회의 참여주민 연 8,679명 정도의 숫자로 대규모 시민참여의 기회와 경로를 창출했다는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을 체험하고 지식을 축적한 것은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의 목표가 4,000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볼 있다. 시정 사업에 대한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는데, 개별 사업의 제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업제안과정에 혼란을 준다는 인식하에 주제별 사업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2015년) 오히려 이런 방식이 다양한 사업제안에 제약을 준다는 것 때문에 폐지하는 대신 사업의 투표과정에서 분과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2016년) 다양한 제도 변화를 꾀했다. 이런 실험들은 매년 성과와 함께 한계를 보였으며 이후 전면적인 참여예산 사업구조를 변화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16년 서울시에서 새롭게 설치된 협치추진단과의 협력 하에 제도개선TF를 진행했으며, 새롭게 시행한 협치형 시정사업과 더불어 그동안 동이나 구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혁신계획 수립 과정을 참여예산 과정으로 포괄하는 제도변

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시 참여예산 중 지역형 사업이 유사함에 따라 발생한 두 제도의 종속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다.

표 7 연도별 서울시참여예산 제도 개선사항

구 분	개 선 사 항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형평성 보장 : 각 자치구 기반 위원 분과별 최소 1인 부여 ○ 참여예산사업 부적격사업 탈락기준 등 심사기준 마련 ○ 시의회와의 연계 강화 : 사업심사결과 설명, 참여예산위원회와 간담회 등 ○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보완 : ‘14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예산 모니터링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공무원 및 자치구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 참여 제한 ○ 제안사업 심사기준 구체화 : 제안사업 심사 시 적격·부적격 혼선 최소화 ○ 「총회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 일반주민 참여예산사업 결정과정에 참여(2,500명) ○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 현장 확인 결과와 서울위키 결합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전체공통사업(375억 원)과 구 지역사업(125억 원, 구별5억)으로 이원화 ○ 시 전체공통사업 제안사업 선정 시 전자투표 도입으로 시민참여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상정사업 전체 40여개 이내(1인당 10표 이내 투표권) ※ ‘14년 : 560개(1인당 168표) ○ 전담조직 신설(주민참여예산팀) 및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전문성 확보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자치구 사업 구분, 자원배분 :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 제안사업 연중 공모접수(상시, 수시) ○ 시민 역량강화 및 활동 강화 지원 : 컨설팅단 운영, 예산학교 교육과정 강화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전체 예산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심사 공정성 및 품질 제고 ○ 자치구 참여예산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서울특별시, 2018년 제도개선 방안, 내부자료.

표 8 서울시 참여예산 연간 추진 표(기준: 2018년 운영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2월
'18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1월)	시민제안사업 접수 (2.1~3.14)	사업 분류, 적격검토, 통폐합 (3.15~4.29)	민관예산협의회 구성(3월)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5.1~7.1) (숙의 공론 - 사업 구체화, 유사사업 통폐합)	총회상정사업 공고 (7.2~7.11)	지역형 및 협치형 사업 제출(8월 초)	참여예산 총회 (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 (9.1)	참여예산사업 편성 (9.2~9.30)
					區 참여예산제 평가 (6월)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심사(7월)		
	참여예산 위원 추첨(2월)	참여예산 위원 위촉식(3월)						
예산학교 회원 공고 (1월)	1기 예산학교 (2월)	찾아가는 예산학교 (3월)	상반기 심화교육 민간전문가, 공무원 교육 (4월)	2기 예산학교 (6월)	하반기 심화교육 (7월)	찾아가는 시민투표 홍보 - 예산학교 회원 (8월)	3~4기 예산학교 (9, 11월) 찾아가는 예산학교 (10월)	
예산학교 회원 모집·관리, 제안사업 심사 단계별 메뉴 구현, 제안사업 시민의견 달기 구현, 참여예산사업 정보공개 관리메뉴 구현,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리 등								
	1차 온예산 시민의견서 작성 및 역량강화(3~5월), 예산낭비감시('18.3~'19.2월), 결산회정참여(5~6월), 2,3차 온예산 시민의견서 작성(7월, 9~10월)							평가 토론회 개최 (11월)
		시민예산성과금 심사(3월)		참여예산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5월)				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10월)

서울시 참여예산의 변화과정을 주요한 참여예산의 구성요소별 특징으로 분류해 짚어 보면, 1년간의 참여예산 과정을 6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9 서울시 참여예산 과정의 요소와 내용

구성요소	개요	내용
사업제안 및 심사과정	사업제안의 구조 분과체계	시민들의 사업제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할 것인가
참여예산위원 모집과정	위원선정 방식 연임 등 운영 규정	참여예산 위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예산학교 과정	위원 자격 및 역량강화	참여예산 위원의 역량과 제도 운영의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온라인 정보공개 과정	재정정보의 공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재정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체예산 과정	참여예산제의 확대	어떻게 사업 제안 외에 전체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마련할 것인가
예산모니터링 과정	평가와 환류체계 참여예산사업의 성과관리	선정된 사업의 성과 관리와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① 사업제안 및 심사과정

서울시는 모든 참여예산제 사업의 기본 구조인 참여예산사업 제안과정과 이를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여타 지역의 참여예산제와의 차이점이라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사업제안의 구조가 다양하다는 점으로 이는 일차적으로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을 지니고 25개 자치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에 기인하는데 애초 서울시 사무와 자치구 사무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만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 사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이는 예술인참여예산 과정에서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 사업을 염두에 둘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²⁾. 매년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시정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도했고 이를 위해 사업제안자의 선택에 따라 제안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또한 시정형 사업에 있어서도 개별사업 제안과 주제별 제안 방안을 반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지역 사업 중 계획기반형 사업은 기존의 개별 사업 제안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수립한 지역계획에 수반되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시정형 사업 중에서 사업의 제안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치형 사업유형으로 포괄했다.

그림 2 2018년 서울시참여예산 사업구조



*서울시, 2018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

둘째는 심사과정에서 공론과 숙의 과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인데 위원회의 분과회의는 최소 6차례에서 많게는 10차례를 넘게 개최되었는데, 특히 분과회의의 개최가 운영계획에 따른 정례회의도 있었지만 분과 내의

2) 이 점에서 보면 기존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면 소관사무의 분류체계에 의해 예술인 참여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고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지만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참여예산제의 특징이 오히려 다양한 예술인 당사자의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특징일 수 있다.

자체 결정에 의해 개최되기도 했기 때문에 비공식 회의를 고려하면 회의의 개최 건수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선 분과회의가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무엇보다 분과회의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논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되었다. 해당 분과에 해당하는 사업부서가 간사를 맡아서 사업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심사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17년부터 기존의 분과회의를 민관예산협의회로 재편하면서 공론과 숙의 과정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기존에는 참여예산위원회로만 구성된 분과회의가 사업심사를 담당했다면 2017년부터는 사업부서 공무원과 동시에 민간전문가도 민관예산협의회 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사업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분과회의 심사가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예산에 맞춰 선정하는 기능만 했던 것에서 제안된 사업을 변경하거나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특히 분과별 심의과정은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되는 사업의 사전심의 기능을 했는데, 전체 선정 대상 사업의 130%를 결정했다.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은 분과회의의 실질화를 위해 분과의 심사 내용이 아니라 결정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는데, 최초 제안사업의 숫자와 제안사업 예산의 총액을 5:5 비율로 해서, 전체 사업비(최초엔 500억 원, 현재는 350억 원)를 분과별 실링 액으로 분배했다. 이는 분과별 심사 실링 액이 정액이 아니라 매년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사업의 분야별 관심도에 따라 분과별 실링 액이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사업분야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현행 서울시 참여예산제 사업유형

분야	유형	내용
시정분야	일반 참여 예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350억 원 규모 · 일반사업 30억 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 원 미만 - 최소사업비 1억 원(사업특성에 따라 예외인정) - 주요 분야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등
	협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0억 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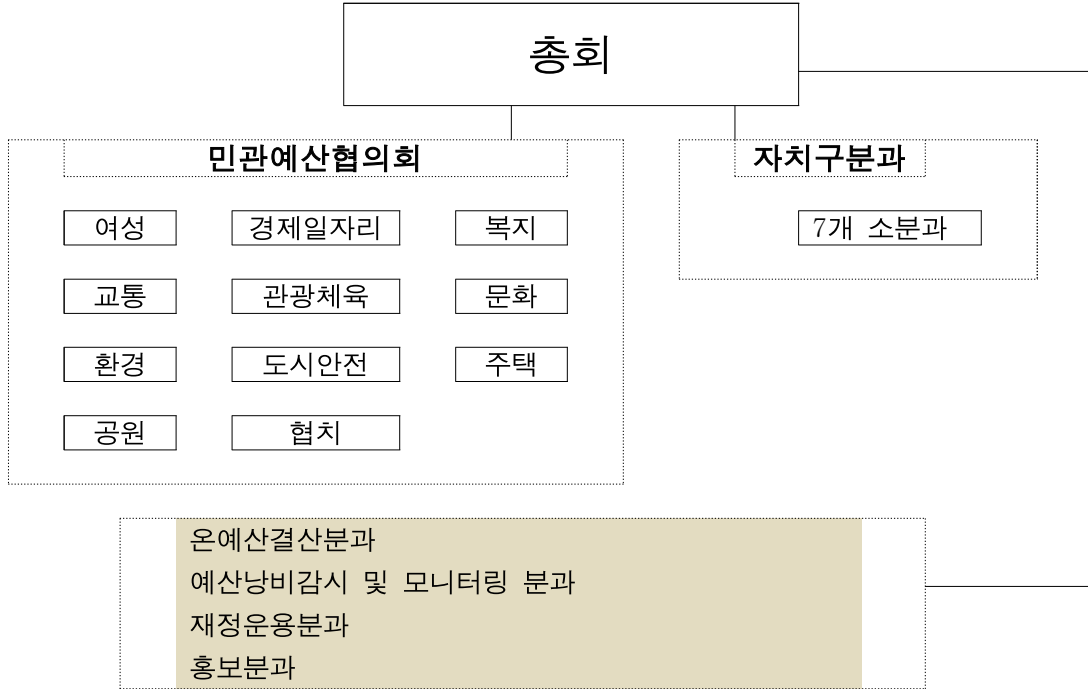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 10억 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 원 미만 · 주요의제 - 2017년: 총 35개 사업, 8,878백만 원(12개 실·국·본부, 26개부서)
지역분야	일반 참여 예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5억 원 규모(자치구별 평균 5억 원) -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자치구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 일반사업 2억 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천만 원 이내
	지역 사회 혁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구(區)별 10억 원이나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區)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 -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민관 공동 계획, 실행이 필요한 사업 등
	마을 계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동(洞)별 3천만 원 -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의 발굴 사업 - 기존 동지역회의사업

예술인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참여예산제와 유사하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업들이 제안될 수는 있지만 지역 간 균형이나 안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술인의 지역별 분포가 불균등하고 또한 청년예술가 사업의 사업구조 하에서 제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지역 특징을 고려한 당사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같은 개방식 공모 제도와 다르게, 공모 주제를 특화하는 방식의 사업제안을 유도하는 것 역시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참여예산제의 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참여예산위원 모집과정

참여예산위원의 선정과정은 기본적으로 공모 과정을 통한 추천방식인데,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연령별 기준은 서울시의 전체 세대별 구성을 고려하여 반영했는데 이를 통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갖도록 했다.

표 11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구조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서 특기할 부분은, 사업심사를 하는 민관예산협의회나 자치구분과 외에 특별한 기능을 하는 기능분과가 부가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위원과 자치구 분과 위원은 중복되지 않지만 기능분과의 경우에는 겹침이 가능했다(2018년부터 기능분과의 온예산결산분과와 홍보분과가 독립분과로 분리되었다). 온예산결산분과는 서울시 전체 사업에 대한 부서별 예산편성 전, 편성 후에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를 담당하는데 특히 예산편성 후의 의견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시의회에 예산안이 송부될 때 별도 서류로 함께 제출되도록 제도화되었다.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는 기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참여예산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 하반기 실시하면서 당초 시민이 제안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그리고 재정운용분과는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과로 설치되었다. 이는 단순히 단년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원칙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보면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예술인참여예산 참여예술인이 당사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 과정

서울시 참여예산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예산학교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시민들의 참여과정을 실질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견지했다. 현재 최소 6시간의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예산위원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참여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했던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일에 걸쳐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1일차엔 제도 소개 및 전반적인 서울시 재정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일차엔 사업심사 과정에 특화된 워크숍과 실습 위주의 과정이 배치되었다. 즉 기본적인 제도 및 재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무와 관련한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했다는 뜻이다.

표 12 2018년 예산학교 기본 커리큘럼

회차	교육명	세부내용	강사
1일차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제 알기	[프로그램 안내]	담당공무원
		[2018 서울시 정책 및 예산 이해] - 지방예산 관련 주요 개념 및 편성절차 - 지방예산 현황(서울시 및 자치구 현황 중심) -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 주민참여 중요성에 대한 이해 - 서울시 주요 시민참여창구 및 프로그램 소개 : 민주주의서울, 정책박람회 등	문혁 (재무행정팀장)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 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역사 - 서울시 및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국내·외 참여예산 사례와 시사점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역사와 현황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운영기획팀장, 시민협력팀장)

		- 201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예산학교, 참여예산위, 참여예산사업 등 세부 이해	
2일차	시민참여방법 알기 및 실습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 서울시 재정정보 공개현황 및 참여방법 : 서울위키, 재정포털, 재정공시 등 - 예산낭비신고제도의 의의 및 참여방법 - 예산낭비신고제도 사례	김상철 (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참여예산 제안사업 사례 학습] - 서울시 참여예산에 반영된 실제 사업제안서 소개 - 사업제안 및 심사과정 유의사항 등 시민참여 가이드 - 성인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시민참여의 가치 강조	최승우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시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 참여자 각자 제안사항 준비하여 조별 토론 - 상호 토론 통해 제안내용 수정 보완(공동제안 가능) - 완성된 사업제안서 실제 접수(상시접수로 처리)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마무리 안내 및 수료증 수여 등]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위원들이 분과로 배정되고 실제 사업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심사 방법에 대한 심화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온예산 분과에서 참여결산이나 예산안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부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④ 온라인 정보공개 과정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사업심사 과정 자체가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정보의 공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위키라는 공개 플랫폼인데 서울위키에는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각년도 사업설명서가 공개되고 댓글 기능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작성된 댓글은 행정망을 통

해서 사업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직접 답변을 달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의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2018년부터는 참여예산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역시 공개된다. 이런 재정정보의 공개는 참여예산위원이 하는 모니터링 과정과 함께 예산낭비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성과금제도와 결합하여 참여예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시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전체예산 과정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제시과정으로서 온예산 과정은 2012년에 시범사업 과정으로 시작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각년도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드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현장예술인들의 검토의견서가 별첨으로 첨부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 별도의 분과로 제도화된 것이 2014년 부터인데 특히 서울시는 2016년부터 상반기에 진행되는 결산과정을 참여결산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온예산 과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부서별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편성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함으로서 온예산 과정을 실질적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참여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참여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부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적인 의견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참여예산제는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는 해당 지방정부가 운용한 재정 제도의 규정과 관행을 구체적인 맥락으로 가진다. 이는 참여예산제가 하나의 이상적인 제도로서 이념형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의 참여예산제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여예산제도는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시민들의 재정 필요를 발굴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존의 행정 관행이 좀 더 혁신하여 더 많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주요한 한계는 (1) 형식적 운영 (2) 제도 우위적 집행 (3) 취약한 재정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한계는 서울의 참여예산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발

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의 장점은 (1) 높은 수준의 제도 탄력성 (2) 참여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3) 결정권의 시민 부여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에서 발견하기 힘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속의 예산제와 별도로 청년자율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존 참여예산과정에서 별도 특별 분과로 청년 분과를 두거나 혹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서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거버넌스를 두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기존의 참여예산제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제안한 사업이 최종적인 사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이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지역의 적용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참여예산의 질적 변화를 위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3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와 청년자율예산제 운영비교

	시민참여예산제	청년자율예산제
대상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참여방식	신규 사업 제안(공모)	참여자 숙의를 통한 신규 사업 제안
사업기간	단 년도 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운영부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집행부서	실·본부·국	*청년청, 실·본부·국
정책대상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참여규모	서울시민 300명 (전자투표 10만명)	서울시 청년 1,000명 (전자투표 별도)
구성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청년, 전문가, 공무원 등

절차

- ① 제안→
- ② 심사→
- ③ 우선순위 선정

- ① 거버넌스 참여자 모집→② 정보공유 및 학습→
- ③ 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공론·숙의→
- ④ 예산안 심의

*서울시(2020),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

(2) 국민참여예산제

2010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의무화된 참여예산제도는 지난 7년 사이에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적용, 운용되고 있다. 하향식으로 전개된 참여예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참여와 협치의 기능 자체가 소위 ‘토착화’의 경로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국민참여예산제’를 제시했는데, 전체 4가지 비전 중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항목의 세 번째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표 14 국민참여예산제 공약 현황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민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p>‘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 신설</p>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집, 2017.

국민참여예산제가 지방분권 과제의 하나로 언급된 점은 고려할 만한데, 이는 기존의 분권론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대립 속에서 지나치게 지방정부의 기관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를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보고, 국민참여예산제 역시 자치분

권의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여타 참여예산제 도입의 맥락에 비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실제로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취약성을 드러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부채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재정통제 장치로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8년 예산에는 국민참여예산제 시범사업으로 6개 사업 총 422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 중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일환인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 중에서 선정되어 반영되었고,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서비스, 365일 일자리 상담서비스 운영,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 농어촌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예산액이 큰 것은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총 356억원이 반영되었다.

이후 국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한 편으로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와 다른 국가 차원의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 수준의 참여예산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으로써 마련되었다. 기존에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으로서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원칙)을 통해서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던 부분을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 절차 마련의 근거를 명확화
- 2)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견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
- 3)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표 15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 ③ (생략)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월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분기·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 ----- 세항 단위 이하로 구분하여 매월 -----. ----- -----.</p>
<p>신 설</p>	<p>제5조의2(예산과정의 국민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참여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민참여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이는 현행 참여예산제가 원리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분권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실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예산심의권과 독립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직접성에 대한 기존의 대의 기구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재정제도로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오영민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에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있는 16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평균 0.98%로 나타나나 참여예산제가 없는 18개국이 4.51%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오영민(2017) 또한 후속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이 증진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검토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16년) 자

료를 활용하여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 정도가 높은 수준인 부산 사하구, 광주 북구, 울산 동구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의 효율성을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억제하거나 투입된 자원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경우 향상될 수 있다’는 가정을 활용하여 부산 사하구, 광주 북구, 울산 동구의 통합재정규모 대비 행정비용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재정 효율성은 지방분권화의 주요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 (correspondence)하고 비용대비 산출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방재정 운영원리’로 보면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로 지역회의와 인터넷,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선호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재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정의 형평성 측면은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지원이 증가 했는가’로 살펴보았는데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광주 북구, 울산 동구의 통합재정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표 16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지자체의 재정효과

구분	단체	분야 등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우수	부산 사하구	행정비용	53,631	57,514	61,409	63,419	68,091	71,915	78,540
		%	20.66%	19.67%	18.68%	18.55%	18.26%	17.23%	17.66%
		사회복지	139,667	154,169	167,025	193,081	217,143	249,901	260,615
		%	53.81%	52.74%	50.82%	56.49%	58.23%	59.88%	58.61%
	광주 북구	행정비용	78,659	78,662	79,118	84,442	90,866	97,409	97,362
		%	22.13%	20.11%	18.68%	18.86%	18.78%	18.47%	17.07%
		사회복지	207,418	213,159	239,673	267,553	298,793	333,379	353,518
		%	58.36%	54.51%	56.58%	59.77%	61.76%	63.20%	61.98%

울산 동구	행정비용	41,104	41,577	46,193	48,792	51,380	54,402	61,069
	%	31.00%	29.42%	28.17%	22.97%	23.65%	25.22%	25.41%
	사회복지	47,035	48,579	63,190	83,311	89,395	99,050	113,478
	%	35.47%	34.37%	38.53%	39.22%	41.15%	45.92%	47.23%
전체	행정비용	107840	113285	119474	124887	130442	137251	146623
	%	19.98%	20.00%	19.30%	18.95%	18.97%	18.29%	17.87%
	사회복지	184657	196645	218741	254745	282120	315861	334341
	%	23.96%	24.07%	24.53%	26.43%	28.10%	28.92%	28.24%

주: 1. 단위는 백만 원이며, %는 통합재정규모 대비를 의미함
 2. 2010~2016년도는 최종예산 기준임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연구, 2018. 1. 재인용

참여예산과정을 기존의 예산 과정과 비교하면 크게 4가지 측면에서의 참여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민정책수요 조사 과정을 보완하여 좀 더 세분화하고 예산편성 절차마다 적절한 공개절차를 통해서 각 세부 단계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에 실시하던 의견수렴과정과 유사해서 국민참여예산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기대와 거리가 있다.

예산형성형 국민참여예산제도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국민 참여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 · 행정이 거부감이 완화 · 사업심사 과정의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효용성 낮음 · 기존의 의견조사와 차별점 부재 · 욕구와 정책의 불일치 발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혹은 정책 사업별 선호 조사 · 일정 규모, 국민 관심 사업에 대한 ‘배심원형’ 의견조사

	· 예산낭비 신고 및 포상금제 확대 강화
--	------------------------

이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참여의 직접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대부분 예산편성과정에서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 참여예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으로, 이는 참여예산의 실질적인 권한의 범위를 보여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편성절차에 사업심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참여하는 국민 역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장해야 실질적인 참여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예산편성형 국민참여예산제도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참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가장 익숙한 참여예산의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업의 심사과정이 복잡함 · 사업부서의 부가적인 하중 발생 · 사업선정을 둘러싼 부정적 갈등(경쟁) 심화 가능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화된 사업제안 통로 마련 및 1차 분류 및 적격심사 진행 · 부처별 사업 현실성 검토, 부처분야별 민관협의회의 심사 · 예산국민참여단의 숙의 및 선호사업 결정

이와 같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참여예산제도 외에 현재 서울시나 대구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협치형 사업제안제도’는 부분적으로 참여예산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제안자의 국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집행한다는 일종의 예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과정의 중요한 과정인 집행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예산의 책임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산집행형 국민참여예산제도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효능감이 직접적임 · 예산참여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행과정에서 부정이나 잦음 발생우려 ·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곤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수행형 사업제안과 위탁형태의 공동사업수행 · 집행 중인 참여 및 일반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와 함께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이후 예산편성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참여예산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상 범위가 참여예산사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예산에 대한 결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현재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시민참여결산과정’이라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평가 및 결산형 국민참여예산제도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에 대한 감시 과정을 제도화 · 기존의 결산과정에 적용하여 시행 · 성과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참여의 동기가 희박 · 전문화에 대한 부담감 가중 · 적절한 피드백 수단의 마련이 어려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국민관심 사업 목록 선정 후, 사업별 국민결산단 구성 · 평가 및 결산 과정에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평가단 참여 	

이런 측면에서 현재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의 참여수준과 예산 단계별 국민의 참여방법을 고려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의견 수렴형 형태의 참여방식에서 점진적으로 국민이 보다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서, 위의 모델 중에서 ‘예산형성 및 예산편성단계의 국민

참여'에서 나아가 '평가와 결산단계의 국민 참여'까지 확대해 간다는 방향성이다. 즉,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형 국민참여제의 기능을 토대로 현 방식인 '예산형성형 국민참여제를 확대'하고 예산집행형 국민 참여제와 평가 및 결산형 국민 참여제의 방식을 보완적으로 설계하는 형태로 도입했다(조세재정연구원, 2018). 장기적으로는 예산형성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인 재정참여를 위해 현재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각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기존 지자체의 사업제안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참여방식을 설계하고, 예산집행 및 예산평가 단계에서는 예산형성 및 편성형 참여방식의 보완적 제도로써 참여예산의 집행과 평가의 대상 범위를 참여예산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기존 집행 및 평가제도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표 17 국민참여예산 단계별 고려사항

단계	내용	검토사항
사업제단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게시, 마감 · 신청자격 및 사업 유형 · 사업 제안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것인가? · 누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가? · 어떤 방법으로 사업 제안을 받을 것인가?
사업심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단 구성 · 심사단계 구분 · 심사기준 및 한도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구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 심사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가? · 공모로 접수된 사업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분야별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사업에 대한 심사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 ·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사업선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방식(투표 등) · 참여예산의 최종결정 · 과정 공개와 공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최종 선정대상 사업을 확정할 것인가? · 참여예산과 정부 및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업집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사업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선정사업은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과정의 참여방안 · 사업평가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공개 수준은 어떠한가? · 일반재정사업의 집행과 평가과정에 어떻게 국민의 참여를 확보할 것인가?
--	---	--

*출처: 조세재정연구원(2018)

이에 따라 마련된 2018년 국민참여예산은 3월까지 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예산사업의 공모를 진행한다. 해당 사업들은 우선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의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숙성 과정을 통해서, 이를 우선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최초 제안자의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의 규모 역시 조정된다. 이는 부처별로 별도의 민관예산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이 과정에서도 국민참여 절차가 보장되도록 한다. 참여예산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업제안에서 이후 예산국민참여단에 의해 심의가 진행될 때까지 사업 분류 과정과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제안사업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요구하는 단계를 거친다. 우선 사업의 분류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우선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분류해서 관계 부처로 송부한다. 제안 사업 중에서 2개 이상 부처가 연관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처를 지정하여 1제안 1부처의 원칙에 따라 분류된다. 이렇게 송달된 사업 목록에 대해 주무 부처는 자체 검토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이의 신청을 하여 조정한다. 이후 각 부처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법성, 유사성, 적절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적격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여기서 적격성 점검은 사업의 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참여예산제라는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다. 즉 부처의 적격성 검토가 이후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나 예산국민참여단의 우선순위 심의 과정을 대체할 수 없다.

표 18 부처 적격성 검토 심사표

기준	판단근거	판정
----	------	----

합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가? ■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가? 	<input type="checkbox"/>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부적격 시 구체적 사유> 상기 판단근거 등에 기초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를 2~3줄로 기술	
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가? (사업의 목적 및 수혜집단 등이 유사한 경우)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유지·운영을 위해 신청한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부적격 시 구체적 사유>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에 효과가 집중되는 사업인가?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인가? ■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부적격 시 구체적 사유>	
효과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투입·수행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가? ■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부적격 시 구체적 사유>	
효과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성 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부적격 시 구체적 사유>	

*출처: 기획재정부(2018)

각 부처에서 예비적으로 수행한 적격성 검토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부처별로 설치될 예정인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역할이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는 일반국민들의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각 부처별로 추천한 민간전문가 1~2인이 포함되어 전체 60명 내외로 구성되는 지원협의회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4개 분과 구조에 맞춰서 동일하게 분과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각 분과 마다 민간전문가가 6명 이상,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담당자가

참여한다. 분과별 지원협의회는 국민제안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분과별 지원협의회는 제안된 사업 중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은 통폐합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사업제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 수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반영된 각 부처별 예산 중 참여예산사업은 6월에 구성되는 300명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각 부처가 요구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의 목록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한다.

표 19 예산국민참여단 분과별 소관부처

분과	소관 분야
복지 분과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보훈처 소관
사회 분과	고용부, 교육부, 문체부, 문화재청, 환경부 소관
경제 분과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산림청, 농진청 소관
일반행정 분과	행안부, 국방부 및 기타 소관 사업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7월 중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참여단의 투표를 통해서 확정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의 특징 상 참여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여 숙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검토한 참여단의 투표와 국민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도 자체, 즉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와 확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데 있다. 각 년도 국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은 별도의 운영계획이 공고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서 확정되고 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이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조례를 통해서 공고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된 것과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또한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기구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

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운영계획은 그 자체로 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작동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운영계획의 변화는 제도에 대한 운영기관의 인식을 보여주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표 20 국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변화 현황

	2019년 운영	2020년 운영	2021년 운영
예산국민참여단	①(구성방법)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로 참여의사 타진 - 통계적 추출을 통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300명 구성(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 ② 압축된 후보사업에 대한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를 제시	① (구성) 일반국민 2,000명(취약계층 100명) ② (역할) 사업 검토 후 사업선호도 제시, 집행 모니터링 활동 참여 등	① (구성) 일반국민 2,000명(취약계층 100명) ② (역할) 사업 검토 후 사업선호도 제시, 사업숙성 과정 참여, 집행 모니터링 활동 참여 등
상시사업숙성	① 기간 : 1~2월 접수, 4월 27일까지 예산요구 ② 추진과정 사업 분류 → 적격성 점검 → 사업숙성 → 지원협의회 → 현장토론 → 예산요구	① 기간 : 1~5월 ② 추진과정 사업 분류 → 적격성 점검 → 사업숙성 → 지원협의회 → 현장토론 → 예산요구	① 기간 : ~ 21년 5월 ② 추진과정 사업 분류 → 적격성 점검 → 적격제안 공감투표 → 사업숙성 → 온라인 토론 → 지원협의회 → 현장토론 → 예산안 요구
토론형 국민참여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 ①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② 기간 : 3월~5월 ③ 추진 절차 이슈공모 → 온라인 토론 → 현장토론 → 예산요구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명칭 변경) ① 주요 사회 이슈 및 각 부처 재정현안에 대해 부처 해결방안 및 국민 제안을 논의 ② 기간 : 20년 9월 ~ 21년 5월 ③ 추진 절차 부처별 이슈 선정 → 온라인 토론 → 현장토론 → 예산요구
사업제안대상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지역이나 분야 구분 없이 사업제안: 단 다년도 사업, 비예타사업, 문제해결형 국민 참여로 구분하여 제시	제안가능 사업을 적시한 positive방식 설명 : 전 분야, 전국단위 사업, 단·다년도 사업, 비예타사업, 신규·계속 사업으로 제시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제시하는 negative 설명 방식으로 변경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 지자체 사무,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경우, 법령 위반, 특정 지역·개인 지원 등)
제안접수	접수 방식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찾아가는 국민제안 현장 접수	접수 방식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찾아가는 국민제안 현장 접수	접수 방식 : 홈페이지(홈페이지로 일원화 소통), 찾아가는 국민제안, 정책고객간담회 현장 접수
적격성 점검	각 부처는 소관 분류 후 7일 이내 적격성 점검 실시 *부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업 배제: 기존에 국회 등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 등	각 부처는 소관 분류 후 7일 이내 적격성 점검 실시	(추가) ① 적격 및 부적격 회신 기한 설정 (부처 접수 후 3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 ② 부적격 회신 이후 이의 제기(1회) 절차 신설
사업숙성	각 부처는 적격성 점검을 통과한 제안에 대해 예산사업화 진행(신규보조사업: 4월 30일까지)	각 부처는 적격성 점검을 통과한 제안에 대해 예산사업화 진행	(추가) 사업숙성은 차년도 or 차차년도 예산으로 선택 추진 가능
기타	각 부처가 숙성하여 기재부에 예산사업으로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 네티즌 의견조사(6월) 실시 * 예산국민참여단 분과회의 시 네티즌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		①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제안 → 적격성 심사 결과 → 사업화 → 정부 예산안 → 국회 확정 → 집행) ② 여타 정책제안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출처: 각년도 운영계획 재구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계획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2) 토론형 국민참여 유형의 도입 (3) 사업숙성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은 직접적으로 규모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초기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단위로서 국민참여단은 ‘참여의 직접성’과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규모가 크면 참여의 효율성이 낮아지

고 참여를 통해서 기대하는 역량의 강화나 숙의를 통한 과정이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국민참여예산제에서의 국민참여단 변화는 참여의 형식을 변화시킴으로서 국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능동적 차원의 맥락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예산국민참여단의 규모는 사전에 예측한 변화라기보다는 임시 대응적 성격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규모에 맞는 참여 지원의 방법이나 온라인 참여에 걸맞은 플랫폼의 개발 등 참여단의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 방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토론형 국민 참여 유형의 도입은 2020년부터 “사업 발굴단계에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민, 전문가, 담당부처가 함께 토론하는 참여방식” (기획재정부(2020))으로 2019년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애초의 운영계획에는 소관부처, 시민단체, 지원협의회의 온 오프라인 토론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운영일정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지만 애초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를 국민들이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공동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토론형 국민 참여는 점차 사업부처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전체 선정사업 역시 기존의 공모형 사업보다 토론형 국민 참여를 통한 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국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회계연도	구분	제안현황(건)		참여예산규모	
		전체	적격	건수(개)	금액(억 원)
2019	계	1,206	160	38	928
	제안형	1,206	160	38	928
2020	계	1,399	109	38	1,057
	제안형	1,399	109	30	489
	토론형	토론주제 3개		8	568
2021	계	1,164	145	63	1,168
	제안형	1,164	145	43	891
	토론형	토론주제 5개		20	277

*출처: 기획재정부(2021).

이는 토론형 국민 참여가 국민 참여의 다양한 영역으로 제안되었던 2020년 시범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라인 중심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토론과 숙의 그리고 공론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에서 비롯된다. 사업숙성의 범위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존에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한정되었던 제안사업의 범위가 차차 년도 예산반영을 염두에 둔 숙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르게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의 특징과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숙성 기간을 늘린 것은 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중요한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의 변화가 2021년에 처음 시도되는 만큼 해당 제도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조건이 사업의 구체화나 추가적인 공론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업의 규모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제도 개선을 피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참여제도의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 운영의 탄력성이라는 맥락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지원기구로 지원협의회를 들 수 있는데 지원협의회의 운영방식도 변화가 있었다. 당초에는 “일반국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 자문 위원으로 활동”(2018년 운영계획)하는 것이었으며 ① 각 부처가 수행한 국민제안사업의 적격성 점검 내용 논의 및 확정 ② 각 부처의 참여예산 후보 사업 숙성내용 논의·확정 ③ 예산국민참여단 회의시 자문 및 참여단의 의견 개진 지원 ④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가 주요한 기능이였다. 하지만 점차 제도 자체에 대한 운영평거나 개선방안 제시 기능을 축소되고 오히려 토론형 참여예산의 주제에 대한 설명자료 제작 등 실무적인 지원으로 기능이 옮겨감. 이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지원협의회 위원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표 22 지원협의회 구성 변화

연도	2018	2019	2020년 이후
----	------	------	----------

구성 방식	민간전문가 30명 + 공무원 30명(기재부* 및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 등 총 60명 내외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민간전문가 70명 + 공무원 40명(기재부* 및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 등 총 110명 내외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총 20명 내외(분과별 5명 내외 구성)
-------	---	--	------------------------

*출처: 각년도 운영계획 재구성

운영제도 상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기존의 국민참여단을 온라인참여단과 통합하면서 나타난 참여방식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2021년에 운영하는 참여예산 과정은 기존에 회계연도에 한정되어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년도 하반기에 참여단을 모집하고 토론형 주제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변화는 참여제도의 성숙이라는 맥락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넘어서는 혁신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변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 23 참여예산운영 프로세스 변화(2020년/2021년)

기존	집중제안 접수	제안내용 적격성 점검	참여단 모집	선호도 투표		
	<1~3월>	<3~4월>	<4월>	<6~7월>		
변경	참여단 모집	온라인 숙성 토론회	분과별 현장 토론회	온라인 숙성 토론회	분과별 현장 토론회	선호도 투표
	< 전년 7월>	< 전년 11월>	< 전년 12월>	< 3월>	< 4월>	<6~7월>
(전년 8월 ~ 당년 2월 중 매월) 제안내용 적격성 점검 검토 + 참여단 공감 투표						

하지만 참여의 절차가 다양화해진 것이 곧 참여의 깊이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온라인 참여가 운영되는 국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토론방을 (<https://www.mybudget.go.kr/> 내의 ‘토론방 참여’ 메뉴) 보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각 부처에서 작성해야 하는 정책 자료의 내용이 개략적인 자료로 제공되고 있고 참여단의 의견제시 역시 ‘공감한다’ 류의 단순 의견표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년도 사업의 개별 현황보다는 연도별 결과를 시계열로 살펴보는 것이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매년 국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을 변경해왔는데 제도 변화의 구체적인 결과가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된 사업의 성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총 1,206건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 중에 13.3%인 160건이 적격검토를 통과했으며 제안건수 대비 4.6%에 해당하는 56건이 사업숙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중 39건이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2020년에 더 악화되었다가 2021년에 다소 개선되었다.

표 24 국민참여예산 사업 결과 현황

	사업 제안	적격검토		사업숙성			예산안반영			국회 확정 (건)
		건수	(제안 대비)	건수	(제안 대비)	(적격 대비)	건수	(제안 대비)	(숙성 대비)	
2019	1206	160	13.3%	56	4.6%	35.0%	39	3.2%	69.6%	38
2020	1399	108	7.7%	68	4.9%	63.0%	38	2.7%	55.9%	38
2021	1164	145	12.5%	116	10.0%	80.0%	63	5.4%	54.3%	63

*출처: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재구성

전체 과정에서 제안사업에 대해 가장 높은 문턱은 제안사업 중 적격으로 검토되는 비율인데 통상 10% 내외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사업 건수 기준으로 최종 예산안까지 반영되는 비율은 5% 이내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안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최종적인 예산반영까지 귀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

감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이 사업부처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부처 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는 우선 정부의 주요한 부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제안사업 부 기관별 현황

	2019	2020	2021	계
고용노동부	40	55	42	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2	6	29
교육부	81	95	63	239
국방부	37	9	10	56
국토교통부	54	140	181	375
기획재정부	5	33	26	64
농림축산식품부	57	47	48	152
문화체육관광부	64	57	68	189
법무부	3	12	22	37
보건복지부	156	338	139	633
산업통상자원부	17	20	22	59
여성가족부	57	77	28	162
외교부	7	3	13	23
중소벤처기업부	23	30	44	97
통일부	2	5	6	13
해양수산부	20	16	24	60
행정안전부	57	70	51	178
환경부	88	124	66	278
계	779	1143	859	2781

제안사업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3년간 6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375건인 국토교통부, 278건인 환경부, 239건인 교육부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189건으로 높은 사업제안 건수를 보였다.

문제는 제안사업의 비율이 높으면 그에 비례해 적격 심사에서 수용되는 사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안사업과 적격수용사업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제안사업의 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부적격률이 2019년에 95%, 2020년에 100%, 2021년에 100%로 사실상 제안사업의 상당수를 부적격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2번째로 제안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2019년에 부적격률이 98%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에도 2021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년 1~2건의 사업만이 부처 검토과정에서 적격 의견을 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부적격률이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제안사업이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국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제안된 국민제안사업의 적격률을 결정짓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가설적으로 부처의 예산규모와 증감추이와 더불어 부처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구조가 민관협력사업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 일방적인 위탁이나 교부사업 비중이 높은지와 같은 사업진행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성격이 상이하고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유인구조도 상이한 상황에서, 사업부처별 사업검토 과정이 동일한 지침에 의해 진행되고(이를테면 국방부 등과 같은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제 대상 부처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쟁점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한 사업검토 매뉴얼에 의해 사업심사가 가능하겠는가는 또 다른 쟁점임. 특히 이는 부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제안하는 국민의 입장에서조차 부처 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사업부서의 행정과정으로만 폐쇄적으로 검토하는 것(사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참여예산사업의 집행시기에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또한 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상이한 상황에서 제안자의 필요를 고려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26 부처별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현황

	2019				2020				2021			
	사업 건수	부적격		적격률	사업 건수	부적격		적격률	사업 건수	부적격		적격률
고용노동부	40	36	90.0%	10.0%	55	53	96.4%	3.6%	43	39	90.7%	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0	90.9%	9.1%	12	12	100.0%	0.0%	6	6	100.0%	0.0%
교육부	81	76	93.8%	6.2%	94	92	97.9%	2.1%	64	60	93.8%	6.3%
국방부	37	36	97.3%	2.7%	9	9	100.0%	0.0%	10	10	100.0%	0.0%
국토교통부	54	53	98.1%	1.9%	140	138	98.6%	1.4%	180	177	98.3%	1.7%
기획재정부	5	5	100.0%	0.0%	33	33	100.0%	0.0%	70	70	100.0%	0.0%
농림축산식품부	57	50	87.7%	12.3%	47	39	83.0%	17.0%	48	43	89.6%	10.4%
문화체육관광부	64	63	98.4%	1.6%	56	54	96.4%	3.6%	68	65	95.6%	4.4%
법무부	3	2	66.7%	33.3%	12	12	100.0%	0.0%	22	14	63.6%	36.4%
보건복지부	156	148	94.9%	5.1%	337	324	96.1%	3.9%	139	139	100.0%	0.0%
산업통상자원부	17	16	94.1%	5.9%	20	20	100.0%	0.0%	22	22	100.0%	0.0%
여성가족부	57	40	70.2%	29.8%	77	60	77.9%	22.1%	28	17	60.7%	39.3%
외교부	7	6	85.7%	14.3%	3	2	66.7%	33.3%	13	9	69.2%	30.8%
중소벤처기업부	23	18	78.3%	21.7%	30	29	96.7%	3.3%	44	42	95.5%	4.5%
통일부	2	1	50.0%	50.0%	5	5	100.0%	0.0%	6	5	83.3%	16.7%
해양수산부	20	11	55.0%	45.0%	16	13	81.3%	18.8%	24	13	54.2%	45.8%
행정안전부	57	42	73.7%	26.3%	68	66	97.1%	2.9%	50	47	94.0%	6.0%
환경부	88	72	81.8%	18.2%	118	116	98.3%	1.7%	67	56	83.6%	16.4%
			83.7%	16.3%			93.7%	6.3%			87.3%	12.7%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재구성.

이처럼 현행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사업을 수용하고 실행한다고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그 자체로 현행 국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보론]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의 참여예산 관련 해외 사례

USDAC 뉴욕지부 예술인들이 만든 홈페이지

ARTS & DEMOCRACY

좋아요 2.3천개

Follow @artanddemocracy

DONATE NOW
SIGN UP FOR THE NEWSLETTER

ABOUT US | WHAT WE DO | FIND RESOURCES | OUR VALUES

PARTICIPATORY BUDGETING NYC

Arts & Democracy serves as a resource to Participatory Budgeting in New York City (PB NYC) integrating arts, culture, and community media into this innovative approach to participatory democracy.

PB NYC
New York City is experiencing a new kind of democracy. Through Participatory Budgeting, residents are directly deciding how to spend public money. Community members are exchanging ideas, working together to turn ideas into project proposals, and voting to decide what proposals get funded. Arts & Democracy is involved throughout the process as a cultural resource.

*<https://artsanddemocracy.org/what-we-do/participatory-budgeting-nyc/>

뉴욕시의 경우에는 참여예산제를 매개로 하는 예산참여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인데, 2018년에 일시적인 국립예술지원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Our Town의 지원으로 참여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진행 방식은 해당 국가 지원금을 매개로 하는 일시적인 기구로 BeCville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한편으로는 청소년, 유색인종 및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 주민교육 그리고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참여예산제의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

여한 예술인들은 목표 지역의 집들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한 다음 총 16개의 개별 사업제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300명 이상 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뉴욕시 전체의 참여예산 과정에서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뉴욕지역의 예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인데, 미국내 사회참여적 예술인들의 모임인 USDAC U.S.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e³⁾의 뉴욕지부 예술인들은 해당 지원금 사업의 참여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의 참여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시카고의 경우에는 미시간 호수 근처에 조성된 로저스 파크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참여예산제를 매개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작품들을 로저스파크와 연계된 지역공동체회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로저스파크의 시설물이나 공원 공간에 예술인들이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데 이 과정을 로저스파크 사업조직에서 지원하고 하나의 지역 지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75개의 작품이 해당 조직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온라인 갤러리와 함께 현지 가이드 책자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2009년 영국의 예술연구기관인 인발브involve가 예술위원회를 대상으로 펴낸 <참여예산제와 예술>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영국 역시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참여예산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지역 중심의 예술지원정책의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된다. 이 보고서는 이미 다양한 참여예산제의 과정에서 참여예산제가 예술지원정책과 지역공동체가 연계되는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예술 부문의 재정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이 연구는 예술 프로젝트가 소규모 보조금, 지역 사회 중심의 참여 예산 방식으로 잘 수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에 직접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에 비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이해하기 쉽고 유권자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다. 연구는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역 예술 부문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가 생긴다.
-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 공적으로 지원된 예술작품에 대한 공공지원이나 소유권을 확보한다.
-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다.
- 예술의 가치에 대한 시민 교육을 진행한다.

- 다른 지역에서 예술조직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 예술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결과는 연구가 소규모의 지역 참여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금 조달을 위해 입찰한 예술 프로젝트는 명시적인 사회적 또는 교육적 소임을 가진 커뮤니티 예술 프로젝트인 경향이 있다.”

이처럼 영국의 예술인들이 참여예산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2008년 이후 예술위원회의 지원방식⁵⁾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예술위원회의 기금에만 의존해왔던 지원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탓이 크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다. 특히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방향에 동의할 수 없었던 기존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일방적인 삭감통보 등의 방식은, 문화예술 행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예술인들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였고,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역시 예술인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에 예술위원회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취약했다는 평가가 뒤이어 나오면서 소위 ‘참여방식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 탓도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예산제를 예술행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 참여의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3) 미국은 중앙부처로 문화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연방문화예술부라는 명칭은 예술인들이 스스로 만든 부처라는 의미를 띠는 단체로 지역마다 지부가 있다. <https://usdac.us/>
 - 4) Emily Fennell and Karin Gavelin with Ruth Jackson(2009),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arts, Involve.
 - 5) 영국 예술위원회는 ‘예술 토론arts debate’라는 문서를 통해서 ‘왜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논의 자체는 지나치게 재정지원의 적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그 외 기금 지원의 투명성이나 예술위원회 행정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영국의 주요한 문화예술행정과 관련한 관심은 ‘예술행정과정의 민주주의’라는 주제가 발견된다.

3. 제도 도입 방안: 청년예술가사업 내 시범사업

우선 현행 청년예술가사업 내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우선 청년예술가사업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행 단계별 제안을 제시한다.

(1) 예술인참여예산 사업의 제도 구성(안)

현행 청년예술가 대상 사업의 사업목적은 예술의 다양성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가 지원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를 최초 지원”하는 부분과 “수도권 외 지역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선정 우대(일정비율)”이라는 점이 여타 기금 지원사업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심의기준을 보면 통상적인 예술지원정책의 심의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다만 세부 내용에서 청년예술가라는 지원대상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현재의 지원 사업 외에 참여예산 방식의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별도의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7 심의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예술창작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예술 활동 경력을 보았을 때,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창작활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 창작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발전가능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활동 계획을 통해 신청자의 예술적 발전이 기대되는가? • 신청자가 예술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신청자가 제시한 성장비전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술적 역량강화가 기대되는가?

다만 지원금의 예산편성 항목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참여예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예시)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기획자, 작가, 비평가, 보조인력 등) •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집 등 출판 인쇄비 • 재료구입비 • 작품 운송비 • 회계검사수수료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 피)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함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 본인에 대한 사례비 책정 가능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장소 대관료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 작품보험료 • 상해보험료 	※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 교통비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석에 한함) • 숙박비 	※사업진행 중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자율적 편성 권장

사업비의 편성기준이 일반 정부기관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유형의 발굴에 유리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편성하기 까다로운 임차료 등 자본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참여예산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창작지원과는 다르게 참여자의 확정이나 작품 제작의 구체적인 계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떤 상태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창작과 연관된 사업을 공모하는데 반해 참여예산 형태의 공모사업은 공모 주제를 ‘동료예술인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여기에 예술생태계 문제해결, 지역사회 문제해결로 구분할 수 있겠다.

표 29 예술인참여예산을 반영한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유형(안)

구분		내용
창작지원사업		기존의 청년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및 경력지원사업으로 진행(장르별 운영)
문제해결형 사업	예술생태계 문제해결형	지역 내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제 공모방식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예술 활동 주제 공모방식
--	------------	-----------------------------------

이를 통해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드시 예술작품의 창작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성 역시 청년예술인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예술인 그룹을, 아니면 비예술인과의 공동 작업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개인당사자와 집단당사자, 그리고 지역당사자까지 포괄하는 수준의 참여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표 30 참여당사자의 수준(안)

대상수준	개인당사자	집단당사자	지역당사자	직업당사자	확장된 당사자	확장된 지역당사자
대상자	청년예술인	청년예술인 모임	청년예술인 + 지역청년	청년예술인 +기성예술인	청년예술인 +기성예술인+지역청년	청년예술인 +기성예술인+지역주민

본 조사연구에서는 예술인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공모사업과는 다르게 예술인 개인의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예술가들 간의 공동작업과 예술인들과 비예술인들의 공동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예술인참여예산제도가 성격상 문제해결형 사업제안 모델을 채택하고 또한 사업의 집행과정을 제안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제도화된다고 할 때 개인이 모든 사업을 책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2010년대 초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기본적인 공모제안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주민모임으로 설정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실제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이를 수행하는 주민모임을 통해서 실행되는데 이를 개인이 아닌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이 담당하도록 한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맥락은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을 공동집행단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표 31 서울시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전략(2015)

보조금 집행 원칙과 기준 (보조금 관리 지침)			
축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전략 1	보조금 집행의 원칙 -주민 책임성	공공성 입증	자발적인 실천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 집행과 끝맺음
			공공성이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과정
		민관의 신뢰 기반	개별 주민은 믿을 수 없다는 관념과 맞서기
			주민역량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통한 수용가능성 확보
		자립성 준비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화한다라는 주민들의 실질적 활동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예산편성의 기준 -주민 계획성	포괄화	마을활동의 창의성, 융합성이 드러나기
			주민이 책임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세세하게 해서 족쇄를 만들지 않기
		유연화	주민이 주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적용하기 규제는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갖추기(전동수)
			간소화

특히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 최소한의 주민모임 단위 방식의 사업구조를 통해서 기존의 보조금 정산과정보다 더 간소화된 사업집행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⁶⁾. 개인 중심의 공모에서 엄격한 사업관리가 필요로 했던 원인인 보조금을 둘러싼 부정이라는 요소가 견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재원 구조의 문제와 이어진다.

재원의 지원방식 역시 현행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이 근거로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일반적인 지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술인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여타 참여예산제도와 다르게, 사업의 집행을 지원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6)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방식은 보고서의 [따로 붙임] 형식으로 추가한다. 다만 마을공동체사업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자체의 구성에 있는 반면, 청년예술인참여예산사업의 목적은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과정관리의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공모사업과는 다르게 사업의 제안 및 실행까지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일시 지급이 가능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인다. 다만 참여예산제 사업의 특성상 분할 교부 방식보다는 오히려 일시 지급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야 실행과정에서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표 32 재원지원 방식

사업유형	재원 교부 방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존 공모사업 방식으로 진행	기존의 보조금지원 방식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일반 조항 근거 - 최소 2차례 나누어 교부 - 사용점검 및 차액 평가
경상보조 사업으로 재구조화	총액 일시 지급 방식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단서조항근거 - 요건 충족 시 지원 - 경상보조 성격

이와 같은 집행을 위해서는 보조금관리 일반지침에 의거하여 단서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사업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청년예술가 사업을 매개로 하는 참여예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3 예술인참여예산 구조(안) 개요

사업시기: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지원시기와 동일
사업유형: 문제해결형 사업유형(신설)
지원 대상: 청년예술가(모임) + 지역청년
교부방식: 일시지급 방식

(2) 예술인참여예산의 운영구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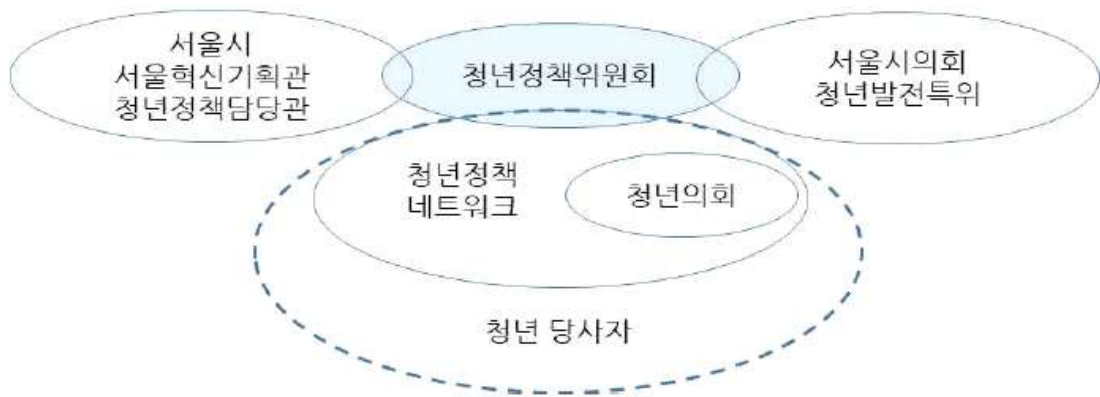
참여예산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운영구조를 통해서 충분한 참여의

7) 예산회계 전년도부터 사업공모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같은 시기에 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지원 사업은 공모-심사-실행의 과정을 거치지만 참여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구체화-선정과정-실행의 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행기간이 짧아 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과 다르게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해 연도 기금사업에 참여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더욱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부금의 지급 방식 역시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는 참여예산위원회와 같이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논의기구의 구성이다. 예술인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여기에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분과별 위원이 1명씩 배정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행 사업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는 청년예술인으로 구성하고 사업을 제안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는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소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추가해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예산학교 등 실무 역량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제안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대표적인 청년참여기구 중 하나인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자체 기구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청년의회와 일반 청년 당사자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관련 구조



하지만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위원회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중복하여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최소한의 신설 기구와 기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운영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모를 통해서 제안

된 사업들은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금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업을 제안한 청년예술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제안취지를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사업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뿐 사업 자체의 선정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목록화를 위해 필요하다.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체화한 사업은 두 가지의 유형, 그러니까 예술생태계 문제해결 부문과 지역 문제 해결 부문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공개된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사업 선정과정을 거친다. 현재 별도의 플랫폼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된 다양한 온라인 투표방식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구현하여 활용한다. 참여예산을 통한 배정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 맞춰 사업순위별로 누적하여 최종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기금 사업 종료시점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집행의 결과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업보고회 방식으로 사업 결과를 공개한다.

지역별 위원+기존 위원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는 1차년도에는 별도로 분과 구분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분과체계로 구분하는데 통상 분과는 사업유형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과정을 1년의 스케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예술인참여예산 운영 체계도(안)

절차	시행 단계	기구
사업 제안 방식	사업공모	
	↓	
참여예산교육	위원추천 및 예산학교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	지원기구 회의
사업 심사 절차 (부적격사업 검토)	사업심사	지원기구+사무처

	↓	
예술인 투표	사업선정	

① 사업제안 단계

통상적인 참여예산과정에서는 공모기간이 보통 2~3월 중에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특정 시기가 아닌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예술인 참여예산의 경우에는 기금사업의 제도적 특징을 고려할 때 청년예술인사업의 공모시기와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 접수 마감시점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제안시작 시점을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다. 창작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안서 양식을 제시하고, 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서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창구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통상적인 접수서류는 창작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보완이 되므로 구체적인 문제의 내용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해결방식이 포함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초점을 두고 제안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35 참여예산사업제안서를 참조한 예술인참여예산사업 신청서(안)

문제해결형 제안사업 신청서			
◆ 제안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예술인여부
◆ 제안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제안사업 내 용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
필요성 기대효과	(구체적인 기대효과의 내용을 서술)
소요예산	

②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주민위원은 공모와 추천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엔 추천방식도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대개 공모-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지역별 할당된 정원에 따라 해당 인원내에 맞는 수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주민수의 비례성을 고려하고, 성별을 주되게 고려한다. 청년예술가사업 내에서 세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세대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위원수 할당을 통한 공모가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첫해의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권, 대전권, 광주권, 부산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인씩 모집하고 기존 위원회의 위원회 추천으로 1인씩 하여 총 5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할당해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수가 너무 많으면 분과를 구성해야 하고 수가 너무 적으면 평균적인 참석률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소수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교육을 진행하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고 회의는 대면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표 36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구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정의 : 참여예산조례상 시민에 해당해야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물론, 서울시 소재 기관의 임·직원 및 학교 학생까지 시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적의 제한도 두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은 시민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인원 : 총 300명 이내(공모·추첨 275명, 시장·시의회 추천 25명, 당연직 없음) ※ 추천위원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정 등)를 우선하도록 조례 규정 - 임기 : 1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공모 신청자격 : 조례상 시민에 해당하며,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예산학교 회원)
- 추천방식 : 연령, 성별, 지역 안배 고려하여 무작위 추천
- 2017년 구성현황

구분	성별		지역(자치구)별		연령별		
	남	여	최다	최소	10~30대	40~50대	60대 이상
총원	141	156	15	10	84	142	71

③ 참여예산위원 등에 대한 예산교육

예산교육은 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참여자를 발굴하며 이들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운영과정이다. 교육내용에 따라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특화교육 등으로 나누고, 대상별로 시민교육, 위원교육, 공무원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의 목적, 내용, 대상에 따라 강사진 및 커리큘럼은 물론 개최장소 및 시간대 등 적절한 교육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세밀한 기획과 준비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교육생수 등 양적 목표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인식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3시간 정도의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참여예산제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 기금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업구체화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시간씩 교육을 진행한다.

표 38 예술인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구성(안)

회차	교육명	세부내용
1회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 참여예산제의 제도 소개 및 취지 - 예술인참여예산제의 특징 및 운영절차
	문예진흥기금의 이해	- 문예진흥기금의 기금 특징 및 사업 특수성 - 사업집행 과정의 유의점과 보조금 규정 설명
	사업의 구체화 방법론	- 사업제안 및 구체화 실습

이와 별도로 예술인참여예산사업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특히 사업제안서 작성 방식과 참여예산

사업의 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업집행 과정의 특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또한 사업부서 사무처 직원들의 이해도 중요한데, 시범사업은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처 교육은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 대상의 참여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함).

④ 사업심사

일반적으로 참여예산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심사는 점차 엄격해지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예술인참여예산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이라는 재원으로 한정되고 또한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단위 사업 내의 세부사업으로 집행되는 만큼 일반회계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예산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사업의 유형을 ‘공모 시기’에 공지하고 있는데, 그래야 사업제안자들이 사후에 부적격사업 판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에서 반영하기 힘든 사유를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9 통상적인 참여예산 부적격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 이행 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
|--|

특정 개인의 수익을 위한 사업편성은 안되고 영리단체나 기업을 명의로 진행되는 사업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내용에 예술적 참여라는 맥락이 없는 경우 역시도 부적절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문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한다(이후 기금 사업평가 시에 기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사항으로 지적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 사업의 심사 과

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 과정이다. 제안사업을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 제안자 설명 청취와 현장 확인 인데, 제안자 설명을 통해 서면 제안서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제안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 구상한 바를 서면으로 잘 정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자의 직접 설명을 들어 서면으로 나타내지 못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사업의 구체화에 참고한다.

⑤ 사업선정 과정

주민투표는 우리나라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 가장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민참여 방식이다. 모든 시민의 의견을 직접 그리고 명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성 및 대표성 시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때문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제안되는 개선방안이 주민투표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이 참여예산을 알게 되고, 직접 참여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적인 참여예산제에서 주민투표는 주로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절차로 실시되고 있다. 모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연령 등 일체의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 선거와 달리 투표권자 여부에 대한 엄격한 확인 절차는 두지 않으며,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당 1표로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자체 전자투표 시스템 ‘엠보팅(M-Voting)’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시민투표를 실시해왔다. 엠보팅은 모바일 투표 중심 시스템이지만 PC로도 투표가 가능하며, 휴대전화 번호 인증 외에는 일체 투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확인 후 투표하면 같은 번호 중복 투표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번호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표자 그룹별 적용 비율 차등 등의 세부적 투표 운영방식 설계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4년 이전에는 투표권을 참여예산위원 등 제한적인 투표권자에게만 부여하고, 투표 방식은 개별 사업별 총회 현장투표로만 진행했다. 2015년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개방했는데, 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의 투

표 적용비율에는 차등을 두고 있다.

예술인참여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해야 하므로 당연히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투표와 별도로 가중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가점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전체 예산 참여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이다. 지방재정법 제39조 2항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 의회 제출 시 주민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마땅히 예산안 전반에 대한 주민의 직접 검토 기회를 미리 부여하고, 그 결과를 주민의견서로 정리하여 의회 예산심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참여예산제 시행 초기부터 참여예산위원회 내 특별위원회 성격의 ‘온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주민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왔다. ‘온예산’의 ‘온’은 ‘전체’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서울시 온예산위원회 활동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예산안 검토시기에 한정된 부수적 특별활동 개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참여예산위원회 내 상설 분과위원회로 발전되었고, 활동영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참조하면 예술인참여예산위원회도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화 외에 전체 기금운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기금편성 과정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에서도 통상 상반기 내에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선정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차년도 편성 예산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참여예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표 40 서울시 예산안 주민의견서 작성절차

I	운영개요
<input type="checkbox"/>	운영기간 : ' 17. 9월 ~ 10월
<input type="checkbox"/>	온예산위원회 구성 : 총 5개 분과 74명(온예산위원 69명, 코디네이터 5명)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 2018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 ※ 2018년 시 예산안 실무조정자료 제공하여 의견서의 질제고(2015년부터 시행)
- 의견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및 실무작성회의 등 운영(총 10회)
- 온예산위원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코디네이터) 운영

II 세부 운영내용

- 온예산 위원회 운영
 - 일 시 : ' 17. 9. 21.(목) ~ 10.31.(목) 총 10회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6층 기획상황실, 서소문청사 13층 회의실 등)
 - 참석대상 및 인원 : 온예산위원, 온예산 코디네이터 등 총 74명
 - 주요내용
 - 온예산 설명회[9.21(목)] : 온예산 활동계획 안내, 예산분석 방법론 특강
 - 예산분석 세미나[9.26,28] : 2017년 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의견 발표(코디네이터),
분과별 의견 공유 및 의견서 초안 작성
 - 온예산 워크숍[10.23,24] : '18년 예산편성자료 설명 및 토의, 초안 작성 등
 - 의견서 작성 실무회의[10.23(월)~ 27(금)] : 분과별 의견서 작성 및 코디네이팅 진행
 - 시민의견서 작성[10.31(화)] : 최종안 검토 및 작성 등
 - 최종 시민 의견서 제출
 - 일 시 : ' 17. 11. 3(금)
 - 제출절차 : 시민의견서 확정(시민참여예산과) ⇨ 예산담당관 ⇨ 시의회(예산안
첨부)
 - 주요내용 : 2018년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 검토의견

(3) 예술인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형 사업의 집행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규정이 필요한데, 기존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의 운영방침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규칙이나 내규를 개정함으로써도 가능하다. 다만 시행 첫년도에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의 구조 내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운영매뉴얼의 변경방식으로 시행하고 이후 별도의 예산편성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43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일정(2020년 기준)

① 서울청년시민위원 모집	2020년 2월 3일 ~ 2월 28일
▶ 서울청년시민회의 온·오프라인 시민위원 모집	※ 상시 모집

② 정책 의제 발굴 2020년 2월 ~ 3월

▶ 정책의제 도출 및 발굴

-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지도 작성 등 워크숍 진행
- 분과 및 소주제별 정책 제안 아이디어 숙의
 - 기존 정책 및 유사사업 검토
 - 기타 참고 자료 (설문조사, 관련 기사, 논문 등) 검토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면담 통한 의견 수렴
- 관련 기존 정책 및 해외사례 검토
- 정책 사업 대시민 의견 수렴

③ 분과 숙의 및 사업계획 논의 2020년 4월

▶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2020.04.25.~26.)

- 주요내용
 - 분과 및 소주제 구성 확정
 - 분과별 주요 사업개요 작성

▶ 분과별 숙의 및 정책사업 발굴

- 진행방법
 - 분과별 숙의를 통한 정책 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서 작성

《 숙의과정 주요 권고사항 》

-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함
-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혐오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의 예산은 제외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
-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거나 사업 변경

④ 사업협의 및 정책자문 2020년 5월~6월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실·국·부서 대상 정책사업 협의 및 자문 (2020. 5월 ~ 6월)

- 목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숙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 및 자문 진행
- 진행과정
 - ▶ 쌍방향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
 - ▶ 분과별 숙의를 통해 발굴될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내용 관련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 사전에 담당부서에 사업 및 활동개요 관련 서면질의 전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사전회신으로 실질적인 논의 진행

※ 제안된 사업이 2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 가능하며 양쪽 부서 담당자는 검토의견을 기재하고 숙의과정에 참석(숙의과정을 통해 주무·협조부서 변경 가능)

⑤ 사업계획 결정 2020. 6월

▶ 서울시 실·국·부서 대상 정책사업 협의 및 조정 (2020. 6월 초)

○ 목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숙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사업 검토를 통한 협의 및 조정

○ 진행과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안분과 - 청년청-사업부서 담당자가 모여, 제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실·국·본부 협의 진행.

▶ 사업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안분과와 함께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사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추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2020. 6월 말)

○ 진행방법

- 전문가 자문, 담당부서 검토 의견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제안자와 서울시가 협의·조정·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

○ 제안주체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 제안방법 :

- 서울청년시민회의 소주제 및 분과별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민관의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최종 사업 제안서 (민관 서명 날인)의 제출.

⑥ 전년도 사업 평가 2020. 06월

▶ 청년자율예산 조정 자문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2020. 06.)

○ 구성

- 서울시 청년청(청년사업팀, 청년정책팀, 운영지원단)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자치구 청년정책 전담부서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의 대표자

- 청년정책 전문가 및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 등

○ 주요내용

- 2020 청년자율예산 집행 사업 평가 후 다년도 정책사업 전환 검토

⑦ 예산안 조정 2020. 07월

▶ 예산안 조정 (2020. 7.)

- 대상 : 분과별로 제출된 사업 전체
- 목적 : 청년자율예산제 범위 이내로 예산안 조정
- 조정방법
 - 담당부서 협의지문결과 및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정책 개선보완 및 예산안 조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청년청 협의를 통해 분과별 적절 예산액의 범위 내 분과별 예산안 조정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2020. 7.)

- 세출예산 요구서 :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
- 요구서 작성
 - 서울청년시민회의 예산논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청 및 담당 실·국 부서에서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이후 온라인 정책패널 설문조사, 엠보팅 대시민 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안 수정·보완
 - 전체 편성과정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심의
 - ※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서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의 기한을 따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2020. 07 말)

- 대시민투표 위한 2021 청년자율예산제 정책과제 확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의결 통해 대시민 의견 수렴 진행위한 시정숙의형 및 자치구숙의형이 포함된 2021 청년자율예산제 정책과제 확정

⑧ 대 시민 투표 2020. 08월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 (20. 8. 29.)

- 투표기간 : 2020. 8. 1. ~ 8. 29.
- 투표참여 : 서울청년시민위원, 온라인 정책패널,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일반시민
- 선정방법 : 시민투표 후 총회에서 확정
 - 시민투표 숙의·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21년도 예산안 제출

구분	총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대시민 투표
반영비율	5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표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대시민투표 관련 사항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⑨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20. 8. [예정]

- ▶ 서울청년시민회의 (본회) 개최 (2020. 8.)
 -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자율예산 (안) 최종 확정

⑩ 예산 협의 및 조정 2020. 9월~10월

- ▶ 예산 협의 및 조정 (2020. 9.)
 - 청년자율예산(안) 최종 조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대시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청년자율예산 예산요구안 수정·보완
 - 서울시 실·본부·국 예산안 및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조정 진행
- ※ 예산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치구 및 청년청 직접 사업 편성.

⑪ 예산(안) 시의회 제출 2020. 11월

- ▶ 2021 청년자율예산(안) 서울시의회 제출 (2020. 11월)

⑫ 4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20. 12월 [예정]

- ▶ 서울청년시민회의 (폐회) 개최 (20. 12.)
 - 2021 청년자율예산 최종 확정 및 결과보고

4. 나가며

참여예산제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에 가장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간다는 관점이다. 즉 참여라는 행위는 완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그 시기에 적절한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예술인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조건은 탄력적인 예술인참여제도를 시행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은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해당 기금의 목적과 참여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기존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간의 행정 칸막이로 인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효과성에 한계로 작용했다. 하지만 예술인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지원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가진 기구이고 또한 전체의 사업부서가 모두 광의의 예술지원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도의 탄력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탐색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한 대상과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의 방법을 실험하고 제도의 확장을 위한 맥락화를 거쳐야 한다. 그 점에서 현행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단위 사업 내에서 참여예산제 방식의 지원제도라는 영역으로 시행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우선 참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참여예산제도의 시행 목적 역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제의 선정이나 참여자의 선별이라는 제도 운영의 측면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예술인들의 자기 문제해결이라는 과제에 참여예산제도가 쓸모가 있는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범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의 규모나 수준이 다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고 부분적으로 보일지라도 초기의 무리한 제도화의 방식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제도를 시간을 반복할수록 참여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 축적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제도 자체에 필요를 가진 예술인 당사자들이 등장하여 이들에게 경험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본 조

사연구에서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포괄적인 위탁 방식보다는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의 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원단’을 직접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 제도 운영과정의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기관과 거버넌스 참여 예술인들이 겪게 되고 이들이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를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나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예산교육이나 사업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역별 참여자에 대한 조사와 백서 제작 등은 도움이 필요할 테지만 이는 개별 과정의 수행을 요청할 뿐이지만 해당 내용이나 구조는 모두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예술기관과 예술인당사자들이 축적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이 예술인들을 지원사업의 한편이 아니라 기금이라는 우리 모두의 공동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8),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2018, 2019, 2020) 국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21), 2020 국민참여예산운영보고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2020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확정.
- 김상철(2018), 서울시청년자율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2020), 서울시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서복경 외(2017),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관한 경험기반 연구.
- 서울특별시(2018), 제도개선 방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임성일(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 오영민(2017),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 조세재정연구원(2018),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연구.
- 행정안전부(2020),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우수사례 심사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청년예술지원사업 공모사업 설명자료.
-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따로 붙임] 마을공동체사업 공모 공고 사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23호

2021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우리구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공모개요

- 사업명 : 2021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1. 11월 (사업별 종료 시기 상이)
- 사업대상 : 주소 또는 생활권이 용산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지역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공동체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6개 공모분야 총 130,000천원

세부 공모계획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1. 2. 1.(월) ~ 2. 21.(일)
- 신청자격 : 주소 또는 생활권이 용산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직계 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공간지원 사업은 최초 보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만 신청 가능
- 한 사업의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은 타 사업의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자유공모

- 소통, 지역문화, 복지, 육아, 환경, 교육 등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
- 공모분야별 사업 개요

유형	공모사업명	사업 지역	자격 조건	사업목적	사업의제	사업별 지원액	사업수	예산
	사업기간							
6개 분야 총 50개 사업 130,000(시비 50,000, 구비 80,000)								
씨앗기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해당동	신규, 연속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자유의제	1,000	16개	16,000 (시비)
	2021.5~10월							
새싹기	우리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해당동		주민모임 (공동체)사업 확대·활성화	지역내 주민의제	2,000	17개	34,000 (시비)
	2021.5~11월							
성장기	활동지원 사업 * (기후환경 개선 지정공모)	용산구	신규, 연속	주민모임 (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 활성화 사업	4,000	2개	8,000 (구비)
	활동지원 사업	용산구						
	2021.5~11월							
동지원	동 주민참여사업	해당동	신규, 연속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5,000	10개 (용산2가, 효창동, 한남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1동) : 동단위계획형	50,000 (구비)
	2021.5~11월							
실행기	공간지원 사업	용산구	신규 (최대 5년지원)	주민 활동 거점 공간 지원	자유의제	7,000	1개	7,000 (구비)
	2021.5~11월							
	골목만들기 사업	용산구						
2021.5~11월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적격 사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외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

구분	세부내용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시비·구비)을 지원받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있는 사업
단체 등의 고유사업	단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일반강좌운영	직업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 조직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민상대 단순강의
영리모임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
단순 복지사업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도시락배달, 김장김치전달 등)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정 종교 교리전파	특정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중도 포기자	전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최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단체·모임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비 범위 : 활동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단기임차료,
(시외)여비, 간담회비(식비 및 다과비 등),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기타(상해보험비, 입장
료,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 지원 제외 대상 :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 인건비, 공과금 등), 자본
적 경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은 제외

○ **자부담 의무 편성 비율**

- 전체 보조금 총액이 1,000천원을 초과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5%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여야함.(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제외)
-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2 온라인 통합설명회

- 일 시 : 2021. 2. 4.(목) 14:00 (예정)
- 방 법 : 사업 설명회 온라인 영상(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
- ↳ 유튜브에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검색 후 접속

- 대 상 :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 내 용 : 2021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안내

3 사전상담 지원

- 기 간 : 2021. 2. 15.(월) ~ 2021. 3. 11.(목)
- 대 상 :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 신규사업자는 필수사항, 연속사업자는 권장사항임
 - 골목만들기 사업, 공간지원사업 신청자는 신규, 연속에 관계 없이 용산구 마을자치센터와 사전상담 필수
- 내 용 : 공모사업 설명 및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 방 법 :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전화신청 (☎ 02-6953-7158)

4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1. 2. 22.(월) ~ 3. 11.(목) 18:00까지
- 방 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2021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택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체(법인)일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등
 - 개별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 활동지원 사업 : 모임소개서
 - 공간지원 사업 : 공간소개서 및 임차계약서 사본
 - 골목만들기 사업 : 모임 및 골목소개서

5**심사 및 선정**

구분	일정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우리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 동주민참여사업	공간지원 사업, 골목만들기 사업
1차 심사	3월중	전문가 심사	서류심사+현장심사 (전문가심사)
2차 심사	4월중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사	
3차 심사	4월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발표	5월중	선정 결과공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사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선정 시 비대면사업 등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우대

○ 1차 심사 : 심사일정 추후통보

- 일 시 : 2021. 3월 중(권역별 심사)
- 내 용 : 제안자가 직접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후 민·관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심사·평가함

※ 공간지원, 골목만들기 사업의 경우, 서류심사+현장심사(전문가심사)

○ 2차 심사

- 일 시 : 2021. 4월 중
- 내 용 : '용산구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
- 심의기준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사업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민관 파트너십 등

○ 3차 심사

- 일 시 : 2021. 4월 중
- 내 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결과발표 : 2021. 5월중 용산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6**보조금 결정 및 사업실행계획서 수정**

- 일 시 : 2021. 5월 중

- 결정통보 : 구청(자치행정과)→ 사업선정자
- 사업실행계획서 수정 제출 : 사업선정자 → 구청(자치행정과)
 - 최종 결정된 보조금에 의거 사업실행계획서 수정 제출(사업규모, 사업 예산 비목, 자부담률 등)

7

사업선정자 교육

- 일 시 : 2021. 5월 중
 - 장 소 : 각 동 주민센터(찾아가는 선정자 교육)
 - 대 상 : 사업선정자(대표제안자 또는 실무자) 등
 - 내 용 : 협약체결 준비, 보조금 집행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사업 추진시 반영해야 할 인권감수성에 대한 안내 * 등
 - * 나이, 성별, 학벌, 성적 지향, 장애유무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성평등한 마을을 위한 우리의 약속 등 (20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171p 별첨)
- ※ '사업선정자 교육'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8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기 간 : 2021. 5월중
 - 협약체결 : 구청(자치행정과) ↔ 사업선정자
 - 사업 심사 중 예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된 제안서를 토대로 협약 체결
 - 사업선정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일괄 교부
 - 협약 전, 보조금 전용통장과 체크카드 발급 안내 및 통장개설 여부 확인
 - 협약 시 제출한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
- ※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금지

9

보조금 사업 관리

- 기 간 : 협약체결일 ~ 2021. 11월(※공모사업별 종료시기 상이)
- 내 용

- 사업선정자별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실행 확인 및 컨설팅 지속 추진
- 사업선정자는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구청(자치행정과)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선정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선정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참여
 - 열린 마을강좌(교육) 및 회계 교육 이수
 - 동별 네트워크(사업지기 간 네트워크) 및 성과공유회 참가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필수(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제외)
 - 2021년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10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정산내용 및 결과보고
 - 협약 준수 여부, 보조금 및 자부담 적정 집행 여부, 증빙서류(결과보고서,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통장사본, 지출합계표 등) 제출 확인 등

유의사항

- 제출하신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 지원을 철회하거나 환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일기간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전체 보조금 총액이 1,000천원을 초과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5%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제외)
- 사업선정자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사업대표자 3인중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교육 미참여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편성·집행·정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마을사업팀(☎ 02-2199-6392)
-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02-6953-7158)
- 동주민센터(☎ 아래 표 참조)